

임실군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2월 16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조례 제8호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”을 “(연구단체의 구성)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”을 “(연구단체의 등록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활동계획서”를 “연구활동 계획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”를 “사무 및”으로, “소관 전문위원”을 “의회사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”를 “(연구단체 운영심사

위원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의원 연구단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각각 “연구단체” 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30일이내” 를 “30일 이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연구단체” 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연구단체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활동계획,경비” 를 “연구활동 계획, 경비” 로, “별지 제4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 으로, “별지 제6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계획심사결과” 를 “계획 심사결과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연구활동계획서” 를 “연구활동 계획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 으로, “별지 제6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연구 활동” 을 “연구활동” 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 폐지)” 를 “(연구단체 폐지)” 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별지 제1호서식》

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단체명칭 :
2. 설립목적 :
3. 단체 인적사항

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서명	비고

년 월 일

신청인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《별지 제2호서식》

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.

연 구 단 체 명			
변 동 의 원	당 초	의원	
	변 경	의원	
변 동 일 자	년 월 일		
변 동 사 유			
기 타			

년 월 일

신청인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《별지 제3호서식》

연구활동 계획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내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 활동비	총 액	금 원(W)	
	산출내역	(세부내역 별첨)	
기 타			

년 월 일

신청인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《별지 제4호서식》

심사결과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11조제3항의
규정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의원
연 구 주 제		
심 사 결 과	심 사 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《별지 제5호 서식》

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주제 변경내용	당초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	변경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	(별첨 : 구체적으로 서술)
연구활동비	총 액	금	원
	산출내역		
특기사항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《별지 제6호서식》

심사결과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11조제3항,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의원
연 구 주 제		
심 사 결 과	심 사 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임 실 군 의 회 의 장 (인)

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

《별지 제7호서식》

연구활동 결과보고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○○년도 ○○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	
연구내용	연구주제			
	연구목적			
연구 활동 동 비	수령액	금	원(W)	
	집행액	금	원(W)	
	잔 액	금	원(W)	
	집행내역 (별표 기준참고)	물품구입 및 인쇄비	금	원(W)
		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	금	원(W)
		전문가 활동 경비	금	원(W)
		기 타	금	원(W)
	특기사항		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	

- 붙 임 1.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보고서 1부
 2.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.
 3. 기타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[별표]

연구활동비 정산기준

활동비목	정산내역 기준	비 고
물품구입비 인쇄비 등	○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	영수증 첨부
행사비용	○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(식대 등)	영수증 첨부
비 고	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	